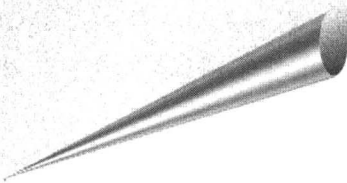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 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란에서는 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되는 '산재보험법판례속보'에 게재된 내용을 선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 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 1997. 1. 16.  
판결 96구17013
- 판시사항 :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과거 진폐증 병력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주 문 : 피고가 1996.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 판결요지

망인은 진폐증을 앓기 이전에는 신체상의 다른 질병이 없었고 진폐증이 발병된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른 질병의 소인도 없었으며 망인이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진폐증이 호전됨이 없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신체의 기능이 계속 저하되어 사망하였고 의학상 진폐증이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됨을 고려할 때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진폐증은 아니라도 진폐증이 원인이 되어 심장질환이 발생, 악화된 끝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판결이유

#### 1.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권○○는 1974. 1. 20.부터 1979. 8. 13.까지 약 5년 6개월간 ○○광업소 선산부에서 근무하다가 1981. 1.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시행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1형(1/1),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요양대상으로 판정됨에 따라 1981. 7. 3.부터 1985. 2. 28.까지 약 3년 7개월간 요양을 받은 끝에 치료종결하고 1987. 3. 30. 장해 11급으로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으나, 1995. 4. 3.부터 1995. 9. 15.까지 3회에 걸쳐 밀양시 내 이동 소재 영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1995. 9. 15. 위 영남병원에서 선행사인은 진폐증, 확정형 심근증, 중간선행사인은 심부전, 신부전, 심방세동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위 망인의 처인 원고는 1995. 9. 26. 위 망인의 사망이 위 진폐증 및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은 1995년까지 시행한 정밀진단결과 약 8년간 진폐증이 특별히 악화됨이 없이 생활하였고 그 합병증도 발견되지 않은 점 및 영남병원 주치의의 소견서상 위 망인의 주된 사인인 심장질환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주로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1995. 11. 4. 원고의 위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2.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망인은 오랜 직업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성심으로 진행된 결과 위와 같은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이 유발되고 그것이 사인이 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인정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제2, 3, 8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다만, 을 제3호증의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증인 권○○의 증언, 당원의 영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3, 6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망인은 1974. 1. 20.부터 1979. 8. 13.까지 약 5년 6개월간 태영광업소 선산부에서 근무하다가 1980. 10. 1. 초진시 진폐증으로 의심되어 1981. 1.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시행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1형(1/1),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요양대상으로 판정됨에 따라 1981. 7. 3.부터 1985. 2. 28.까지 약 3년 7개월간 요양을 받은 끝에 치료

종결하고 1987. 3. 17. “진폐2형(2/3 :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 음영이 다수 있는 것), 경미 11급” 판정을 받아 1987. 3. 30. 장해 11급[환기 기능이 20%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 이상인 자 중 진폐증 병형이 1·2형으로 판정된 자 또는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자(Fo)로서 진폐증 병형이 2형 이상으로 판정된 자]으로서 금 2,363,880원의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

위 망인은 그 후에도 계속 실시된 진폐정밀검사에서 1991. 11. 4. “진폐2형(2/2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다수 있는 것), Fo(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자), 장해 11급” 판정을, 1993. 2. 8. “진폐2형(2/3), Fo, tbi, co, pt, 장해 11급”의 판정을, 1994. 2. 21. “진폐2형(2/3), 단순폐결핵, Fo, 장해 11급”의 판정을, 1995. 5. 9. “진폐2형(2/3), Fo, tbi, pt, co, 장해 11급”의 판정을 각 받았다.

(2) 위 망인은 원래 건강한 체격의 남자로서 위 진폐증을 앓기 전까지는 신체상에 다른 질병이 없었으나 위와 같이 진폐증 판정을 받고 치료를 종결한 후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계속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기침을 많이 하고 가래가 많이 끝었으며 사망하기 전에는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

(3) 그리하여 위 망인은 심한 호흡곤란, 흉통, 해소, 농성객담증세를 보여 1995. 4. 3. 부터 같은 해 4. 29.까지, 1995. 6. 26.부터 같은 해 7. 14.까지 1995. 7. 22.부터 같은 해 9. 15.까지 3회에 걸쳐 위 영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심전도 검사 및 엑스선 촬영결과 심방세동, 심부전 및 폐부종, 진폐증의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음으로써

최초에는 증상의 호전이 있었으나 재입원시에는 심방세동, 심부전이 호전되지 않고 치료활용성으로 진행됨으로써 위와 같이 1995. 9. 15. 위 영남병원에서 선행사인은 진폐증, 확정형 심근증, 중간선행사인은 심부전, 심부전, 심방세동,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4) 일반적으로 위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이 된 심부전은 폐색전증, 심근염, 고혈압, 심근경색 등이 그 발병원인이고, 심방세동은 만성폐질환, 류마치스성 심질환, 판막성 심질환, 고혈압성 심질환 등이 그 발병원인이나, 위 심부전, 심방세동과 같은 망인의 심장질환이 위 진폐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관계로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5) 그러나 진폐증이라 함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하는 것(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 참조)으로서, 의학상 진폐증이 생길 경우 혈액 속의 탄산가스를 배출하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기능을 하고 있는 폐의 면적이 줄어들고 폐에 혈액을 보내고 있는 심장에도 부담을 줌으로써 폐색성 환기장애 또는 제한성 환기장애를 유발시키고 그 정도에 따라 폐성심(肺性心, 폐에 원인이 있어 발생하는 심부전을 의미함) 등의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위 망인은 위 진폐증을 앓기 이전에는 신체상의 다른 질병이 없

있고 진폐증이 발병된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른 질병의 소인도 없었던 점, 위 망인이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진폐증이 호전됨이 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신체의 기능이 계속 저하된 끝에 사망한 점, 의학상 진폐증이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당한 요인을 갖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진폐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망인은 위 진폐증이 원인이 되어 심부전, 심방세동 등과 같은 심장질환이 발생, 악화된 끝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위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 건강상식

《알아봅시다》

**항암식품 (11)**  
포도

포도의 주성분은 당질인데 대부분이 포도당과 과당으로 되어 있다. 주석산, 사과산, 펙틴, 이노시톨, 탄닌 등 그리고 무기질로는 칼슘, 칼륨, 철분 등이 있는 알칼리성 식품이고 자주색 과피의 색소는 안토치안계획의 에닌과 그 분해물인 에니딘 등이 있으며 과일 중 비타민이 적은 편에 속한다.

또한 포도에는 어떤 종류의 페놀류나 탄닌이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항종양제로서 유망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포도에는 카페산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폴리페놀 화합물의 하나로 동물의 암을 예방하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포도는 소화불량, 발열, 간장 및 신장장애, 폐 및 골 결핵, 치질, 정맥류, 골수염, 괴저(壞疽)압기타 많은 악성질환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다.

붉은 포도주가 다른 술에 비해 노화에 대항하는 힘이 강한 것은 그 속에 함유되고 있는 풍부한 항산화제에 의한 것이다. 프랑스 사람이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어도 미국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이 적은 것은 식사할 때 마시는 붉은 포도주가 지방이 많은 식품에 의한 동맥의 손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작용하기 때문이다. 붉은 포도주를 양조하는 과정에서 항산화제의 공급원인 포도의 색깔이 포함되어 있는 껍질이나 포도씨앗이 그대로 남아 있어 최종 제품의 붉은 포도주엔 항산화제가 이행하는 것이다. 붉은 포도주의 항산화제 중 강력한 것은 카테킨으로 이것은 차에도 포함되어 있다. **판결**